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레
 - 제1251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2
 - 제12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제125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제125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규 칙
 - 제6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 제64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제65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40
- 고 시
 - 제2015-20호 : 중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46
- 공 고
 - 제2015-201호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48
 - 제2015-203호 : 2015년 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54
 - 제2015-213호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 57
 - 제2015-218호 :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5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 정보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상담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권역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

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평생직업교육, 시민교육, 문자해독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3명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학계 및 관계 전문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관할 구역내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권역별 · 동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8.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직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 내지 감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감면 등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별 조례 내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7조(동·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2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센터 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및 권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절차 등) ①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우리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용어 재정립(안 제2조 등)
- 나.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 (안 제6조)
- 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학습관의 사업평가 및 학습상담 등의 기능 강화 (안 제12조)
- 라. 동별·권역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 신설 (안 제17조~20조)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 (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의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 (안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54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육아종합지원센터”란「영유아 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영유아 및 아동”을 “영유아”로 하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9.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

제4장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같은 조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같은 조 제12호 중(현행 10호)“보육과 관련하여”를“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현행 제3항) 중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3조 제6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 <u><신 설></u></p> <p>8. <u>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제7조 ~ 제23조 (생략)</p>	<p>제6조(기능)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u></p> <p>9. <u>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u></p> <p>10. <u>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제7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제4장 <u>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u></p> <p>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u>보육정보센터</u>(이하 "<u>보육정보센터</u>")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u>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 12조에 따른다.</u></p> <p>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보육정보센터</u>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23조의2 (<u>위반사실의 공표 등</u>)</p> <p>① <u>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준용한다.</u></p> <p>제4장 <u>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u></p> <p>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p> <p>②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 제 12조에 따른다.</p> <p>③ ----- 육</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제27조 (생략)</p>	<p>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 (생략)</p>	<p>제28조(이용료 등)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② ----- ----- ----- -----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6. (현행과 같음)</p>
<p>제29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p> <p>제30조 ~ 32조 (생략)</p>	<p>제29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제30조 ~ 32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제33조(비용의 보조 등)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p> <p>7.~10. (생략)</p> <p>제34조 ~ 제38조 (생략)</p>	<p>제33조(비용의 보조 등)-----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육아종합지원센터 -----</p> <p>7.~10. (현행과 같음)</p> <p>제34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2013. 6. 4. 및 2013.12. 5.)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24조~29조, 제33조) : 법 제7조 [개정 2013. 6. 4.]
- 나.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 (안 제23조의2) : 법 제49조3 [본조신설 2013. 6. 4.]
- 다. ‘종사자’ 명칭을 ‘직원’으로, “보육시설”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26조) : 개선사항
- 라. 그 밖에 “영유아 보육법령”에 맞추어 조례내용 일부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대상자 선발) 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 제2호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 제6호 충무아트홀 할인대상은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할인한다.

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서울 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선정기준(안 제2조)

-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지방세 연간 납부건수 : 납세고지서를 1건으로 봄

다. 대상자 선발(안 제3조)

-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5명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라. 우대 및 지원의 범위(안 제4조) : 관련 조례 개정하여 준용

- 주차요금 면제 : 개인(본인 소유차량 1대), 법인(법인소유차량 1대)
- 충무아트홀 공연료 할인 : 개인(본인), 법인(대표자)

마. 우대 및 지원 기간(안 제5조)

- 성실납세자 등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대(단,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4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본문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복무 및 품위	1. (생략) 2. 품위손상 마. 음주운전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운전직렬 공무원) - <u>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u>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u>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 <u>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u>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u>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u>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3.~6. (생략)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허위보고, 품위 훼손 등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u>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u>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8. (생략)				0		0 0 0 0 0 0 0
2. 청 렴의무	1. (생략) 2. 금품·향응수수 등 <u>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u>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u>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가상습수취, 알선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u>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증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증개 행위 3.~ 4. (생략)					0	
3.~ 5. (생략)							
6. 안 전관리	1.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가. 주요 부재(部材)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0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 면	해 임 이상	강 등 이상	정 직 이상	감 봉 이상	견 책 이상
	나.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라. 안전점검 허위보고					0	0
7.~14. (상략)						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무 대비표

[별표 1]징계기준

현 행	개 정 안
<p>※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p>	<p>※ 비고 :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p>

[별표 4]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현 행		징 계 기 준						개 정 안		징 계 기 준					
구분	징 계 사 유	피면	해임상	경등상	정위상	감봉상	견책상	구분	징 계 사 유	피면	해임상	경등상	정위상	감봉상	견책상

현행							개정안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피면	해임상	강등상	정직상	감봉상			견책상	피면	해임상	강등상	정직상	감봉상
	재태 발생 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신설)					0		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라. 안전점검 허위보고					0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금품수수 및 허위 안전점검, 음주운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구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희롱, 성매매 용어 정의 근거 규정 변경
- 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행위 처벌가능토록 변경
- 다. 알선청탁 등 이권개입 행위 징계양정 변경(강화)
- 라.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등 행위는 처벌가능토록 변경
- 마. 안전점검 허위보고 징계규정(감봉이상) 신설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5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판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제1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직무상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금전,유가증권,부동산,선물,향응,편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같은 조제1항제7호로 하고 본문 중 “통상적”을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같은 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같은 조제1항제9호로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를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을 같은 조제2항으로 이동하고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하며,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의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무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p> <p>① (생략)</p> <p>1. <u>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u></p> <p>2. ~3. (생략)</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호 이동></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자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u></p> <p>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7. <u>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 공무원은 <u>직무관련자로부터</u> 금전·부</p>	<p>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u>직무상의</u> <u>관련여부를 불문하고</u></p>

현행	개정안
<p><u>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어느 누구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u>.....</p>
<p>1. ~ 6. (생략) <u>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 <호 이동></p> <p>② 공무원은 <u>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3. <u>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u> 4. <u>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u></p>	<p>1. ~ 6. (현행과 같음) <u>7.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u> <u>8.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u> <u>9.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u> <u>10.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u></p> <p>②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 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삭제)</p>
<p>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제1항.....제14조제1항.....</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본인위주로 되어있는 직무회피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연고관계 대상자 확대

-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된 혈연관계 중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
-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추가
- 구 소속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재직한 자 추가
-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친분 관계자 추가
-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친분 관계자 추가

나. 금품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여부 삭제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20호

중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을 위하여「지하수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보조 관측망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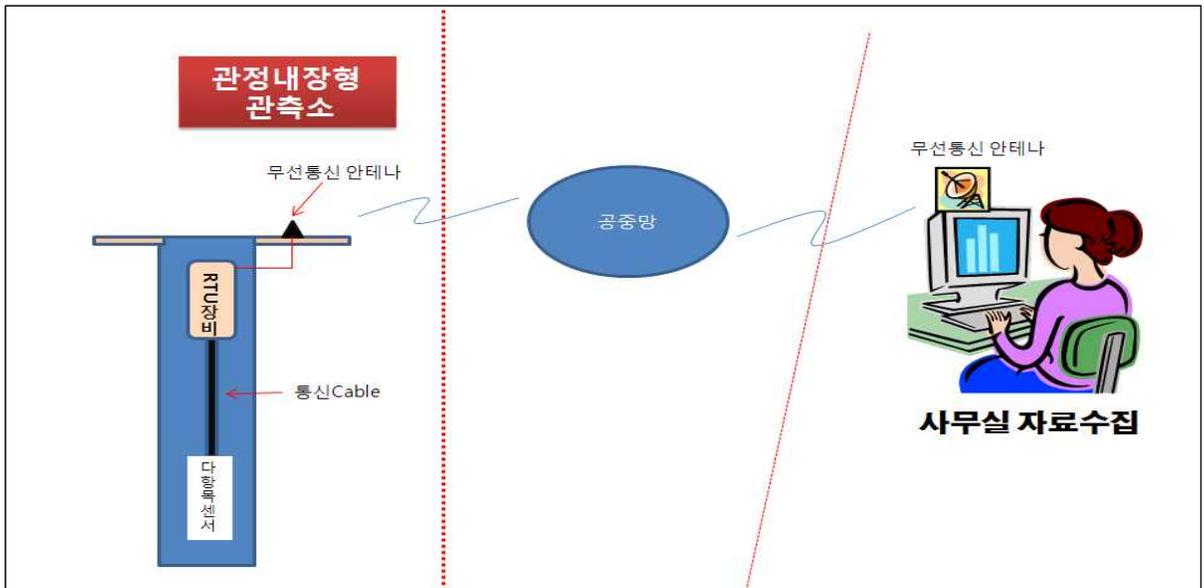
2015년 3월 25일

중 구 청 장

1. 보조관측망의 위치 및 시설현황

관측정명	위 치	심 도 (m)			관측방법	관측항목
		관정	펌프	센서		
응봉근린공원	신당동 844-7	150	90	60	고정식 자동관측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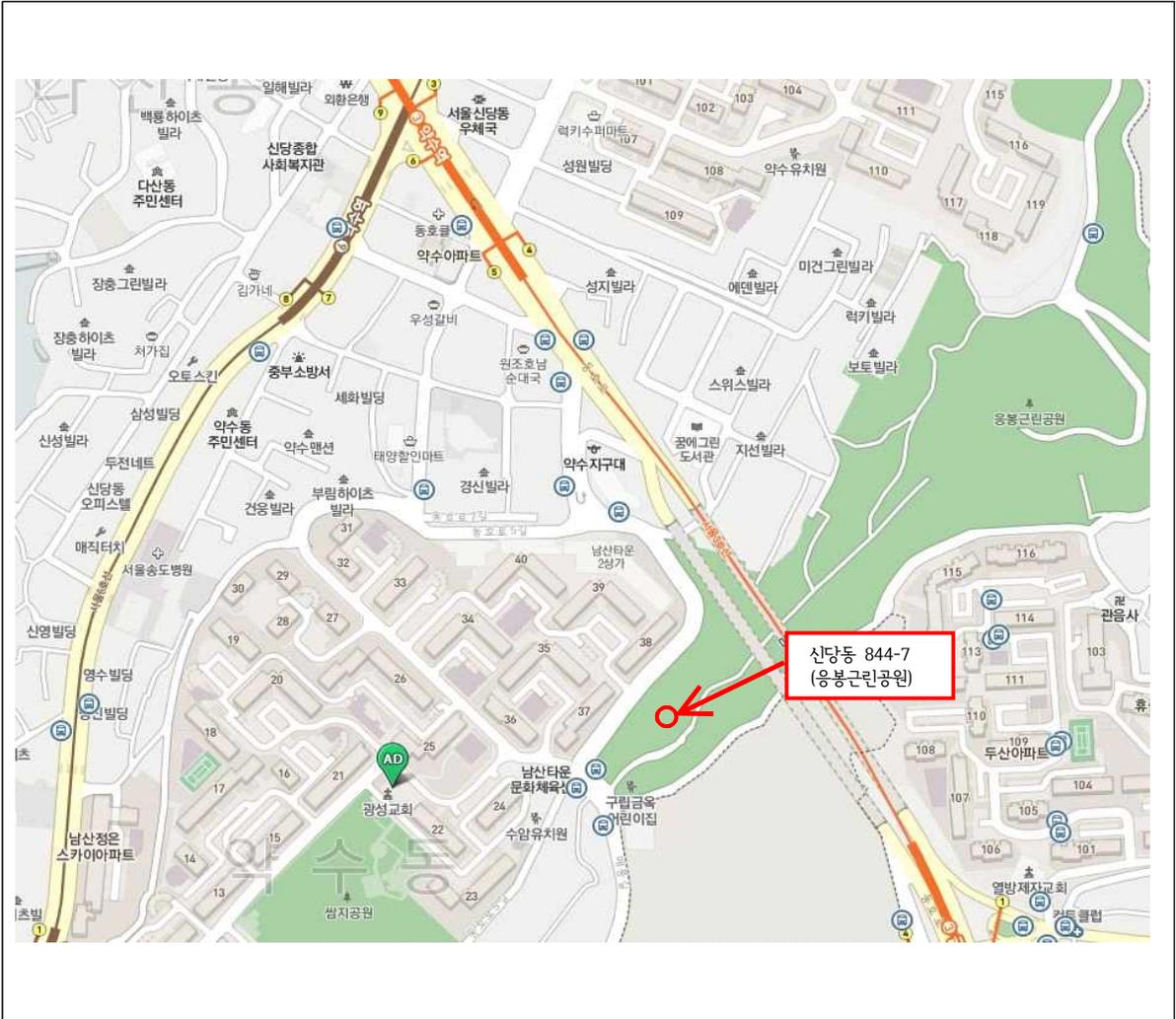
2. 보조관측망 시스템 구성도



3. 측정항목

- 수 위 : 지하수의 수위 변동 상황
- 수 온 : 지하수의 수온 변동 상황
- 전기전도도 :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변동 상황

4. 관측지점 위치도



- 열람편의를 위하여 세부사항은 중구청 안전치수과(☎3396-6162~5)에 구조도 및 위치도를 상세하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201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3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년 03월 27일 ~ 2015년 04월 25일(30일간)**
2. 보관장소 : (주)중앙RDC (☎:02-992-4884, FAX:02-992-4806)
 -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13
 - 서울영업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09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5년 04월 26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인천73다1610(스타렉스) 외 37대(이륜차량포함) 불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차리(폐차) 대상 자동차(이륜차) 내역(2015.03.26.)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사용본거지		
1	2014- 사륜36	인천73다16** (스타렉스)	서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공영주차장	*저당: LG카드(주) 을부번호2826-2002-005459 *저당: 김병* 을부번호2823-2002-016005 *저당: 임운* 을부번호2823-2002-016264 *인천서부경찰서-도로교통법위반 *인천부평경찰서-도로교통법위반 *부평구청-지방세, 주정차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인천서구청-환경개선부담금, 검사미필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건강보험료 *대전광역시청-버스전용과태료 *용산구청-주정차위반 *동대문구청-주정차위반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종로구청-주정차위반 *은평구청-주정차위반 *성북구청-주정차위반 *강북구청-주정차위반 *서울시청-혼잡통행료, 버스전용과태료
2	2014- 사륜37	서울32너68** (쓰렌토)	홍성*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01길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공영주차장	*저당: 현대캐피탈(주) 을부번호-1107-2002-001910 *서울북부지방법원-2009카단8412가압류 2010카단6208가압류 *동대문구청-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하남지사-건강보험료 *중랑구청-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 *성북구청-주정차위반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3	2014- 사륜38	71노30** (스타렉스)	박정*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26길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공영주차장	*저당: (주)솔로몬저축은행 을부번호-2826-2011-005333 *부천오정구청-지방세, 의무보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부천오정경찰서-과태료체납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사용본거지		
4	2014- 사륜39	경기87라51** (이스타나)	권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8번길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공영주차장	*저당: 삼성캐피탈(주) 을부번호-4106-2001-000923 *저당:박위*을부번호-4106-2001-001261 *고양일산구청-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검사과태료 *의정부시청-주정차위반 *일산경찰서-도로교통법위반 *양주시청-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과태료 *광진구청-주정차위반 *도봉구청-주정차위반 *용산구청-주정차위반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광진구청-주정차위반 *성북구청-주정차위반 *노원구청-주정차위반 *송파구청-주정차위반 *강동구청-주정차위반 *서울시청-버스전용과태료
5	2014- 사륜50	76러44** (스타렉스)	(주)오피스**	경기도 안산시 부곡로	중구 청구로1길23 삼성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강남경찰서-도로교통법위반 *상록경찰서-도로교통법위반 *상록구청-지방세, 의무보험과태료 *안산차량등록사업소-검사지연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종로구청-주정차위반 *성동구청-주정차위반 *고양시덕양구청-주정차위반 *강남구청-주정차위반 *구로구청-주정차위반 *동대문구청-주정차위반
6	2014- 사륜51	01수61** (스타렉스)	조*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중구 필동로 35-20 평강빌딩 사유지	*저당: 현대캐피탈 을부번호-1106-2006-000189 *고양시일산동구청-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건강보험중구동부지사-건강보험료 *고양시도시관리공사-주차요금 *중부세무서-징세과 *파주시청-주정차위반 *남대문경찰서-과태료체납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알류 및 저당)
			성 명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강서구청-주정차위반 *마포구청-주정차위반 *서울중구청-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과태료, 검사과태료
7	2014-이륜168	서울은평사893* (JL125)	강성*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중구 마장로 22 등대문공영주차장	“해당내역없음”
8	2014-이륜173	서울노원사272* (CIT1100)	황석*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51길	중구 퇴계로 435	“해당내역없음”
9	2014-이륜194	서울마포아430* (VT125)	박운*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중구 통일로 15	“해당내역없음”
10	2014-이륜195	서울마포사280* (SL125)	이등*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8가길	중구 만리재로 179 위	“해당내역없음”
11	2014-미상335	미상	델피노	미상	중구 다산로42나길37 파라다이스옌	“해당내역없음”
12	2014-미상338	TD01-1823565	미상	미상	중구 소공로6길23 라루체웨딩홀 옆	“해당내역없음”
13	2014-미상340	KM4CA1503311011	미상	미상	중구 을지로42길19 앞	“해당내역없음”
14	2014-미상342	152QMI*80551451*	미상	미상	중구 다산로20길29	“해당내역없음”
15	2014-미상343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앞	“해당내역없음”
16	2014-미상351	210286	미상	미상	중구 통일로 15 서울역파출소 옆	“해당내역없음”
17	2014-미상352	VT125F 1011270	마그마	미상	중구 다산로33길 33	“해당내역없음”
18	2014-미상353	KM4CA13A7V 1158953	센스	미상	중구 다산로33길 33	“해당내역없음”
19	2014-미상354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장충단로 210	“해당내역없음”
20	2014-미상360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충무로5가에서 엠버서더가는쪽 육교 아래	“해당내역없음”
21	2014-미상361-1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447 황학아크로타워 앞	“해당내역없음”
22	2014-미상362	6A2ADS3C	포르테	미상	중구 난계로17길 60-13	“해당내역없음”

연 번	관 리 번 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23	2014- 미상364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88길7	“해당내역없음”
24	2014- 미상368	41104222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31길31 티마크호텔 옆	“해당내역없음”
25	2014- 미상369	인식불가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31길31 티마크호텔 옆	“해당내역없음”
26	2014- 미상375	KMYSE3ADS3C 017411	메이저	미상	중구 퇴계로86길60	“해당내역없음”
27	2014- 미상376	KMYSE3ADS5C025933	메이저	미상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번출구	“해당내역없음”
28	2014- 미상382	KMYSE7ADS8C506659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322 광희약국 앞	“해당내역없음”
29	2014- 미상390	KMYOGZ50GOV064609	메시지	미상	중구 다동길 46 동국산업 건물 앞	“해당내역없음”
30	2014- 미상394	KMYSE7ADS8C506659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87길 3-1	“해당내역없음”
31	2014- 미상395	확인불가	미상	미상	중구 청계천로 122 청계천 옆 인도	“해당내역없음”
32	2015- 미상1	KM4CA15C78113712	효성	미상	중구 남대문로 24-1	“해당내역없음”
33	2015- 미상2	MYOSH1005C050350	델피노	미상	중구 동평화패션타운 맑은내다리 앞	“해당내역없음”
34	2015- 미상4	KMYOVL125XC004453	대림	미상	중구 필동로 32	“해당내역없음”
35	2015- 미상5	G*50F-11-94**	JAEIL	미상	중구 다산로34길13 대찬빌라	“해당내역없음”
36	2015- 미상6	KM4CA150334100754	RALLYPR IMA	미상	중구 다산로34길13 대찬빌라	“해당내역없음”
37	2015- 미상7	미상	CITI ACE2	미상	중구 청파로 431	“해당내역없음”
38	2015- 미상14	KM4CE13B731109892	VETERA N	미상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앞 을지지구대	“해당내역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203호

2015년 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5년 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3.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 대상사업 : 지역 현안 중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공공성·지속성을 갖춘 주민 참여 사업
- 사업장소 : 중구 관내 전 지역
- 사업기간 : 협약 후 ~ 2015. 12. 31.
-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학생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
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제2조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중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사업예산 : 금 30,000천원
- 지원규모
 - 지원액 : **사업별 최대 3,000천원**이내
(사업비의 10%이상 사업주체 자부담 필수)
 - 사업성격 :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지원
- 지원절차



2. 공모사업 분야

분야	사업 내용(예시)
이야기와 재미가 있는 문화공동체	마을명소 만들기, 마을신문, 마을잡지, 마을공연,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대학문화거리, 벽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등
함께 나누고 돌보는 복지공동체	공동육아, 다문화공동체, 장애우 봉사활동, 방과 후 교실 가출 청소년 상담, 어르신 봉사활동, 나눔바자회 개최 등
살고 싶은 따뜻한 주거공동체	텃밭 가꾸기, 공동체 밥상, 녹색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아파트 관리비 절감, 층간 소음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등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마을학교, 작은 도서관, 교사 및 학생 모임 지원 등

그 외 마을공동체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제외 사업

- 가. 동일 사업으로 국/시/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나. 특정 정당이나 종교적 선교를 위한 주민 모임
- 다.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마. 기타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공모사업 접수

접수기간 : 2014. 3. 23.(월) ~ 4. 17.(금)

※ 선정금액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

접수방법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3396-4573)

제출서류 : ①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관련 서식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서 다운로드

4. 공모사업 선정

선정방법 : 1차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심사 및 동 주민센터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선정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현실성, 민관 파트너십

선정발표 : 2015. 5. 1.(금)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

○ 선정된 모임(단체)는 의무적으로 마을아카데미·회계교육 이수(일정 별도통보)

※ 미이수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 대상자와 협약 체결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전용계좌 입금

사업비 정산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
- 정산결과 부당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다년도 계속 사업이어도 당해 연도 정산 시행 필수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사업 최종보고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원본(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각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역 전체) 1부 등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구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7. 접수 및 기타 문의

서울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3396-4573)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213호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공람공고(안)

- 1.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간 내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2.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2015. 3.26 ~ 4. 8)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디자인과(☎02-3396-5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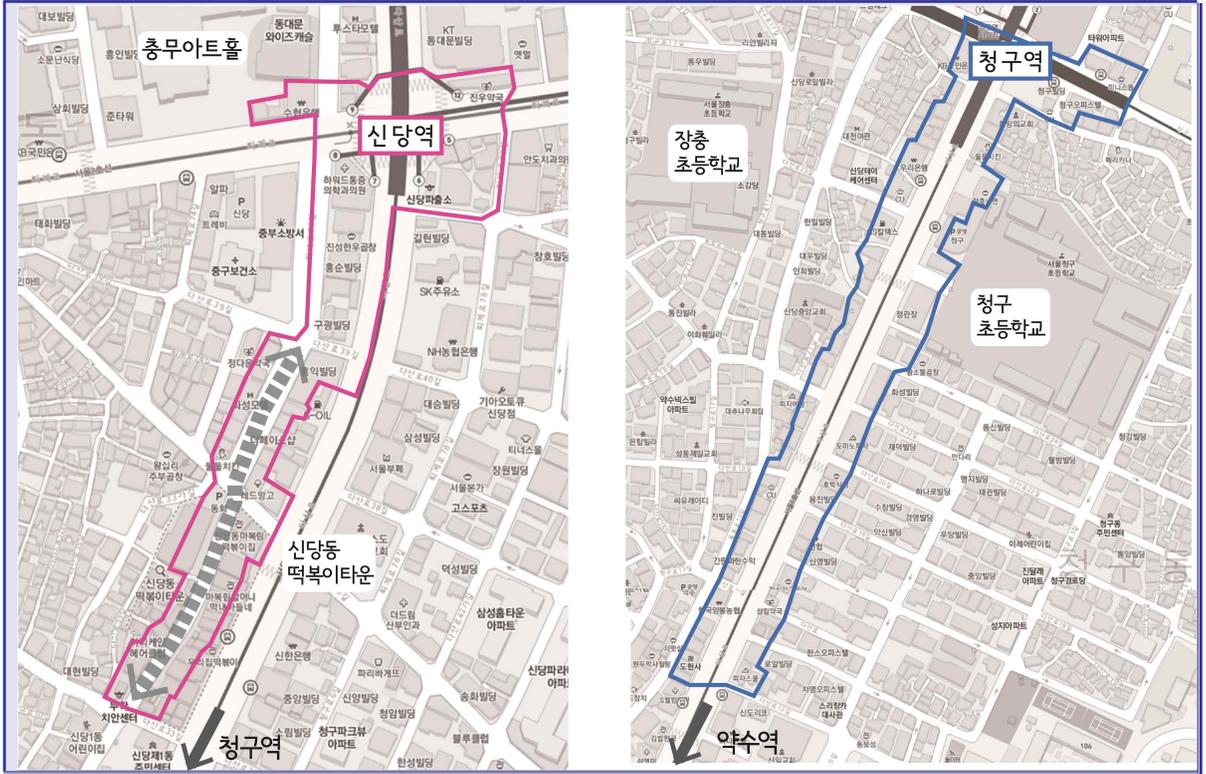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 (2) 위치 및 규모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구간 점포 265개점포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까지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6) 사 업 비 : 531,100천원(사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1업소 당 2,0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붙임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신당역 주변



청구역 주변



청구역 ~ 약수역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218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3. 2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1. 위탁대상 시설(사업)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사업내용	비 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동호로 8다길 22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	244㎡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지원	간가다가 병합운영 선정된 위탁기관 대상 아이 돌봄지원사업 적격심사(예 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2. 위탁기간 : 2015. 7. 1. ~ 2018. 6. 30. (3년)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서

-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센터장 자격요건

-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③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4. 신청 제외대상

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나.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다.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라.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5. 위탁조건

- 가. 법인이나 학교의 경우 정관에 가정(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나.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센터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의무
- 다. 센터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 라.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약정에 의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5. 3. 24. ~ 2015. 3. 30.
- 나. 접수기간 : 2015. 3. 24. ~ 2015. 3. 30.
- 다.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가족과(1층) 출산장려팀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마. 신청서식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7. 선정기준 및 심의

- 가. 수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법인대표 및 센터장 적정성 등 종합평가
- 나. 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수탁기관 심의 선정

8. 선정 방법 및 결과 발표

- 가.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PPT 설명 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나. 평가기준에 의한 심의결과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기관을 위탁기관으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다. 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라.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다더라도 위원회에서 신청법인 전체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재공고
- 마. 선정결과 발표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게재

9. 제출 서류

구 분	서류 항목	비 고
구비서류	① 수탁 신청서 ⇒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법인(단체)의 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 - 정관 및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단체 - 단체등록증 및 정관 회칙 규약 사본 학교 - 등록증 사본, 학교의 회칙 또는 규약,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 서류 1부 ⑤ 최근 3년간 법인 회계감사 결과 서류 1부 ⑥ 법인대표자 및 센터장의 이력서(경력증명 포함) 및 자격 관련 증명서 각 1부 ⑦ 향후 3년간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 ⑧ 가족관련사업 및 다문화가족관련사업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⑨ 자부담금 승낙서 1부 ⑩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로 함(불가피하게 이전일로 제출시 사유서 첨부)	
수량규격	가. 신청서류는 본보고서와 요약보고서 2권으로 작성(전산파일 CD 1부 제출) - 본보고서 : 100쪽이내 작성, 10부(원본1부, 사본9부) - 요약보고서 : 15쪽이내 작성, 10부(원본1부, 사본9부) 나. 10부 모두 목차 포함 작성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며,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나.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 중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선정을 무효로 함
- 라.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 이행
- 마. 선정된 기관이 기일 내에 약정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위탁신청 기관과 약정체결 할 수 있음
- 바.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사. 모집공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중구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 결정에 따라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담당 ☎ 3396-5433)로 문의바람